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고유식별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“시달하여야”를 “통보하여야”로, “현지하고”를 “뛰어나고”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,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(·), 반점(,)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이명박 인

2011년 12월 21일

국무총리 김항식

국무위원
국토해양부장 권도엽

●대통령령 제23385호

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제5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보상받기로 한 자에게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
- 9.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

제13조의2제5항제10호(중전의 제8호) 중 “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”를 “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2제5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택지공급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금보상 대신 택지보상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택지로 보상받기로 한 자에게 일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와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라 현물출자 받은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일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이명박 인

2011년 12월 21일

국무총리 김항식

국무위원
교육과학기술부
장관 이주호

●대통령령 제23386호

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
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로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이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.

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7조제5항 중 “20퍼센트의”를 “학생정원의 20퍼센트의”로, “높일 수 있다”를 “추가로 높일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활성화하고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을 학생정원의 30퍼센트까지로 확대하고, 교육감이 시·도 교육규칙으로 학생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내국인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